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4월 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조주연

가. 제안이유

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,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약사법」 개정에 따라 시·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
이양된 '소독업에 관한 사무 등'과 '안전상비의약품 등록사무 등'을 위임
사무에 신설

- 2) 상위법령의 개정 및 ‘기생충질환예방법’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
- 3) 「의료법」, 「노인복지법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,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- 첫째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등에 따른 ‘소독업의 신고 수리 등의 사무’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,
- 둘째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 제8조 등에 따른 ‘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검진 및 치료 등에 관한 사무’와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등에 따른 ‘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’ 및 「약사법」 제44조의2 등의 개정에 따라 ‘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’ 권한이 시·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,
- 셋째,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제3항의 개정으로 ‘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사항’이 삭제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 사무와 「기생충질환예방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던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를 삭제하며
- 넷째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 내용으로 「의료보호법」을 「의료급여법」으로, 「노인복지법」을 「기초노령연금법」으로, 「전염병 예방법」을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고

○ 기타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사무위임 용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, 관계 법령 및 공약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